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7 발의연월일: 2022. 8. 18.

발 의 자:이태규·유상범·서병수

박덕흠 • 배준영 • 최재형

최연숙 • 이명수 • 김선교

조명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 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교사의 교육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교육활동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건수는 2,269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침해행위는 2,098건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실시를 위하여 교원에 의한 학생생활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활동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2항 및제2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중 "인권보장"을 "인권보장 등"으로 하고, 제18조의 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4(학생의 <u>인</u> 국	<u> </u> 보 <u>장</u>) (생	제18조의4(학생의 <u>인권보장 등</u>)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u>ㅇ</u>)
<u><신 설></u>		② 학생은 교원 또는 다른 학
		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20조의2(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
		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u>수 있다.</u>